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농약관리법 일부개정		
② 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약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,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 기구 마련 필요 ○ 무인헬기 또는 드론 등을 통한 항공방제는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크므로, 농약 안전관리 차원에서 항공방제업을 관리하고, 농약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시 활용하고자 함 ○ '19년 PLS 전면시행 준비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총괄 지휘·감독할 필요성 대두 ○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성·운영 등 법적근거 필요 		
③ 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근거 마련 (안 23조의4, 제23조의5, 제23조의6, 제23조의7 신설) ○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(안 제3조의2 개정) ○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교육·지도·감독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추가 ○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법상 근거 신설(안 제14조의3 신설) 등 기타 미비점 보완 		
④ 사업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책임	농기자재정	⑤ 담당자
⑥ 선정기준	'20년 정부입법 계획		⑦ 사업기간
			김호균 팀장 김보민 사무관
			'2020.6~12월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부내 의견조회	'20.06.15	김호균 팀장 김보민 사무관 송하나 주무관	
○ 법령정비협의회	'20.06.11	김호균 팀장 김보민 사무관 송하나 주무관	
○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 개최	'20.06.09	김호균 팀장 김보민 사무관 한국탁 연구관 김효경 사무관 성재욱 사무관	